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지원 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307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2. 발의일자 : 2024년 7월 26일

3. 회부일자 : 2024년 7월 29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가 전체의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관련 지원 규정이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실태조사나 관리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외교의 보조동력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

Ⅲ. 검토의견

1. 법률안의 입법 취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지원 강화를 위하여 외교부 내에 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외교부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요청에 응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u>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① -- -- <u>지방자치단체의-----</u> ---- <u>외교부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전담부서”라 한다)를 둘 수 있고-----행정적 지원을-----</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지원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u>전담부서 설치 및 지원-----</u> -----.

2. 주요내용 검토

공공외교는 수행 주체, 대상, 수단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재외공관 등이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외교법 제6조¹⁾ 및 제7조²⁾에 따라 외교부는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동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2024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19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시행계획 수립기관이며, 시행규모는 아래와 같음.

연도	사업 수	예산(단위 : 백만원)
2024년	총 533개 (중앙부처 211개, 지자체 322개)	618,640 (중앙부처 475,038, 지자체 143,602)

(출처: 2024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는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지역축제 및 전통 행사를 외국 도시와 연계하여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외교, 도시외교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중앙정부의 공공외교를

-
- 1) 공공외교법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 공공외교법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보완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려 국제 교류와 협력의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공공외교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

외교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외교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³⁾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⁴⁾를 살펴보면, 공공문화외교국의 공공외교총괄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다만, 현행 공공외교법은 외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극 행정’과는 거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외교부 내에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외교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 지방외교 활성화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2024.4.23.)에 따라 지방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 내 전담지원부서인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이 신설(2024.6.24.)

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공공문화외교국)

① 공공문화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4)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공공문화외교국)

② 공공문화외교국에 공공외교총괄과, 유네스코과, 문화교류협력과, 정책공공외교과, 디지털공공외교과를 둔다.

④ 공공외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의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되었기에 법 개정의 실익이 미미하다는 외교부의 의견이 있음.

둘째, ‘전담부서’는 「정부조직법」상 외교부의 보조기관(하부조직)에 해당하므로, 대통령령(직제)에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별법률에 전담부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음.

셋째,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이 최근 외교부 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업무 담당부서로 신설되었음을 감안하여 기존 부서로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도지사협회의 의견이 있음.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현재 외교부 내에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이 신설⁵⁾되어 운영 중이므로 개정안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방안 또는 기존 부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법 제정의 체계 및 형식상 과 단위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⁶⁾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지원 관련 전담부서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규모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또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5) 혁신행정담당관 산하에 비직제 조직인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을 신설(2024.6.24.)함.

6)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문 의 처
02) 6788-5270